

 ARTISTREE



# 2023 조건부(지정) 기부금 사업안내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 안내서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 소개

###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문화 나눔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지원 등 다양한 국가 문화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49년간 문화예술 기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 대표 공익법인입니다.
- 예술위는 지난 49년간의 약 4,000억원의 기부금을 관리·지원해 오고 있으며 해당 기부금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지원되어 문화예술진흥, 지역 문화예술 발전,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예술인 창작지원 등 다양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기부는 사회 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의 일환으로 1970년대 기업의 자선과 메세나 활동에서 시작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문화마케팅, 재능기부 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예술위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도록 도움과 각종 매개 사업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후원인 대상’ 등 다양한 예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부자에게는 후원을 통한 사회 공헌 효과와 더불어 세제혜택을 제공해드리며, 기부금사용의 제도적 관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공헌 성공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혜자(예술가, 예술단체)에게는 기부금 사업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더욱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 창작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 관련 연혁

-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특례기부금(법인), 법정기부금(개인) 단체 지정
-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 2011년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 지정
- 2012년 문화예술후원브랜드 예술나무 브랜드 발족
- 2017년 법정기부금 재지정
- 2022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공익법인 단체로 통합
- 2023년 공익법인 단체로 변경 지정 추진



## ▶ 예술위 기부금사업 장점

### 1. 수수료 면제

예술위는 접수된 기부금을 세금 또는 수수료 공제 없이 접수된 전액을 문화예술 사업에 쓰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세제 혜택

예술위는 기부금을 모금 및 목적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3. 투명성

예술위 기부금은 정부예산처럼 엄격한 수입·지출을 통해 관리되어 사업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보조금법과 기부금품법을 준수하며 예술위 기부금품 관리 규정 등 의거하여 기부금의 부당사용을 막고 목적사업인 문화예술 확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편의성

예술위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통한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DONUS) 플랫폼을 제공하여 주요 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보호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더욱더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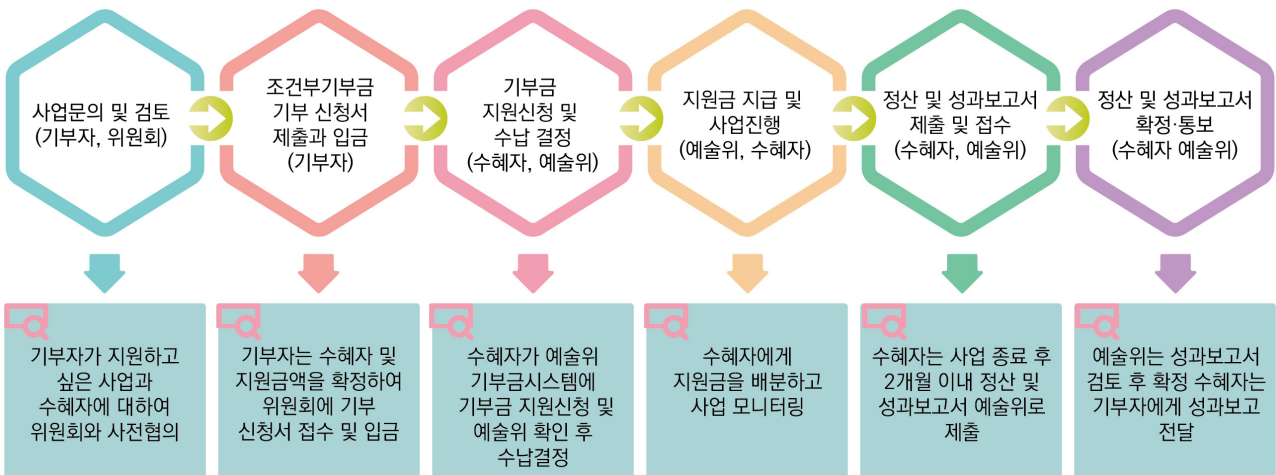
### 5. 효율성

행정안전부 기부금시스템 및 모금활동을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고 기타 국세청 신고 및 각종 공시(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와 같은 기부금 행정 처리를 예술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6. 네트워크 확대

국내외 문화예술사업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협력채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 기부금사업 추진단계



## ▶▶ 기부금사업 세제혜택 안내

■ 예술위 조건부(지정)기부금 사업을 통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술위를 통해 기부하실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서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제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기업은 연간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비용처리) 되어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고,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기부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10년 간 이월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세제혜택 비교 (비인허가단체 VS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기부금)

구분	기부금이 인정 안되는 경우	일반기부금 인정
대상	비인허가 단체 및 개인에게 기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
기부방식	직접 기부	조건부(지정)기부, 일반기부, 실명제 기부
세제혜택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 기부금액 × 법인세율 만큼의 세금 감면 효과</li> <li>• 개인 : (근로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특례기부금과 한도 내 일반기부금 합계액 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사업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 전액 필요경비 처리</li> </ul>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 홈페이지(<https://www.arko.or.kr/supp/>) 에서 기부금과 관련한 제도, 현황, 세제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사업 문의 : 061-900-2297, 2305



## 1. 개인기부자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액의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34조3항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일반기부금)

### / 예 시 /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 A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 ①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근로소득금액은 8,525만원으로, A씨가 기부한 2,0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금액 및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100%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 {1억원 - 1,200만원+(1억원-4,500만원)×5%} = 8,525만원 / 한도액 약 2,557만원 = (8,525만원×30%)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b>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b>	<b>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b>
1억원 초과 3억 6,250만원 이하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 ② 기부금에 따른 공제가능 세액 계산

- 1,000만원×15%+(2,000만원-1,000만원)×30% = **450만원**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 계산 시 유의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세액공제율 15%
- 1천만원 초과분 : 세액공제율 30%

※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기부에 따른 절세액 확인

- 2,000만원 기부 시, 495만원 소득세 감소(450만원+주민세 10% 가산)

※ 주의 : 주민세 변경 및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 예시 /

총 수입액이 1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인 B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 ①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인정 한도액은 2,100만원으로, B씨가 기부한 2,000만원은 30% 한도 내로 전액 경비 산입 또는 공제 가능

##### 한도액

사업소득금액의 30% = 총수입액-필요경비(1억원 - 3,000만원 = 7,000만원) × 30%

#### ②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총수입-기부금-필요경비(1억원-2,000만원-3,000만원) = 5,000만원
- 산출세액 : 84만원+(5,000만원-1,400만원)×15% = **624만원**
-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23.1.1. 이후 적용)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b>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b>	<b>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b>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원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억원 - 3,000만원 = 7,000만원
- 소득세 : 624만원+(7,000만원-5,000만원)×24% = 1,104만원

#### ③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차이 확인

- 소득세 : 1,104만원(기부금 미공제) - 624만원(기부금 공제) = **480만원**
- 2,000만원 기부 시, 기부금이 없는 경우와 약 480만원 소득세 감소 효과



### 3.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 예시 /

기준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이월결손금 '0' 원으로 가정)

#### ①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인정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인 2억원으로, 법인이 기부한 2억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

##### 한도액

기준소득금액의 10% = 20억원 × 10% = 2억원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
- 차가감소득금액 =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총필요경비(기부금을 포함한 금액)

#### ②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총수입-기부금-필요경비(20억원-2억원-0원) = 18억원
- 산출세액 : 1,800만원+(18억원-2억원)×19% = **3억 2,200만원**

\*영리법인 기준 법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2억원 이하	9%	과세표준의 9%
<b>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b>	<b>19%</b>	<b>1,800만원+2억원을 초과액의 19%</b>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7억 8천만원 + 2백억원 초과액의 21%
3,000억원 초과	24%	625억 8천만원 + 3천억원 초과액의 24%

- \*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법인세
- 과세표준 : 20억원
- 산출세액 : 1,800만원+(20억원-2억원)×19% = 3억 6,000만원

#### ③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확인

- 법인세 : 1,800만원+(20억원-2억원-2억원)×19% = 3억 2,200만원

#### ③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차이 확인

- 법인세 : 3억 6,000만원(기부금 미공제) - 3억 2,200만원(기부금 공제) = **3,800만원**
- 2억원 기부 시, 기부금이 없는 경우와 약 3,800만원 법인세 감소 효과